

## 제 6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68조(외국어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전공분야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독해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제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69조(외국어시험과목)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제70조(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 학위과정에 석사학위는 2학기 이상등록하고 취득학점 9학점이상, 박사학위는 2학기 이상등록하고 취득학점 9학점이상으로 재학하고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는다.

제71조(외국어시험의 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전산 입력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제72조(시험일자)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단,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시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제73조(외국어시험 면제) ① 대학원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현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TOEFL IBT 75점, TOEIC 600점, TEPS 550점 이상인 자 <개정 2014.10.31>
3. 외국인으로 한국어능력평가시험 4등급 이상인 자(단, TOPIK 또는 W-TOPIK에 한함)

② TOEFL, TOEIC, TEPS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은 시험일 이전 2년 이내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74조(합격인준) 외국어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 합격을 확정한다.<개정 2014.10.31, 2017.02.06>

제75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자는 재학연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76조(종합시험)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6조의2(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전산 입력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제76조의3(재시험) 불합격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교과목에 대하여 재학 연한 내에 다시 응

시 할 수 있으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신설 2014.10.31>

제77조(종합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직전학기까지의 성적평균이 B등급(평점 3.0)이상인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취득예정자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박사학위취득예정자 :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적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전공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제78조(종합시험의 시험과목) 종합시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석사과정 2개 과목, 박사과정 3개 과목, 통합과정 3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1.23>

제79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시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제80조(시험위원 및 관리)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하고 시험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한다.